

# 입법정책브리핑

Legislation & Policy Briefing

제2026-3호

발행일: 2026. 3. 20. (금)

제432회 국회(임시회, 2026. 2. 2. ~ 2026. 3. 3.)

법무법인(유) 지평 공공정책솔루션센터는 (사)지평법정책연구소와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의 정책적 배경과 관련 법정정책 자료를 전달하는 입법정책브리핑을 발간합니다. 입법정책브리핑은 입법과 정책을 통합적 관점에서 고찰함으로써 법이 현실에서 살아 움직이고 정책이 헌법과 법치주의에 기반하여 구현되는 데에 기여하는 기초자료가 될 것입니다.

## 목 차

### 1. 개관

### 2. 주요 법정정책 이슈

- 가. 필수의료 등 지원 강화
- 나. 농수산물 온라인 유통 활성화
- 다. 재생에너지 지원 제도 정비
- 라. 자사주 소각 의무화

※ 별도의 인용표기가 없는 인용문과 그림 및 도표는 원문을 링크해 두었습니다.

## 1. 개관

제432회 국회(임시회)는 2026년 2월 2일부터 2026년 3월 3일까지 30일간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2026년 2월 12일 열린 제7차 본회의에서 63건, 2월 24일부터 진행된 제8차 본회의에서 8건으로 모두 71건의 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제432회 국회 제7차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법안으로는 (1) 전 국민에게 필수요료를 보장하고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는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정법률안, (2)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 (3)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체계적 육성·지원을 위한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 (4) 고령층의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법률안, (5) 재생에너지 관련 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있습니다.

제432회 국회 제8차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법안으로는 (1)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1년 이내 소각할 의무를 부여하는 등 내용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 간첩죄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법외국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3)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4) 대법관의 수를 증원하고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 사건을 단독판사 관할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있습니다.

제432회 국회의 2026년 2월 12일 본회의와 2월 25일 ~ 3월 1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총 71건의 법률안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공포 후 시행됩니다.

	소관위원회(건)	의안명	제안자
1	법제사법위원회(15)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2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3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4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5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장
6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장
7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소관위원회(건)	의안명	제안자		
8	법제사법위원회(15)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9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10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 의원 등 12인		
11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 의원 등 11인		
12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13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1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1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16		정무위원회(2)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17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18			재정경제기획위원회(3)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재정경제기획위원장
1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재정경제기획위원장	
2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 의원 등 14인	
21		교육위원회(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위원장
2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위원장
23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24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25	외교통일위원회(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교통일위원장		
26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교통일위원장		
27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문석 의원 등 11인		
28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의원 등 13인		
29	국방위원회(4)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방위원장		

	소관위원회(건)	의안명	제안자
30	국방위원회(4)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방위원장
31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방위원장
32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 의원 등 13인
3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34	행정안전위원회(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35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36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9)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장
37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장
38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장
39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장
40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장
41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수현 의원 등 11인
42		항만안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 의원 등 13인
43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 의원 등 10인
44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 의원 등 10인
45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1)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박성민 의원 등 10인
46	보건복지위원회(2)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47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48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1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에너지환경 노동위원장
49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	기후에너지환경 노동위원장

	소관위원회(건)	의안명	제안자	
50	기후에너지환경 노동위원회(1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에너지환경 노동위원장	
5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에너지환경 노동위원장	
5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에너지환경 노동위원장	
5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에너지환경 노동위원장	
54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에너지환경 노동위원장	
5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에너지환경 노동위원장	
56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에너지환경 노동위원장	
57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에너지환경 노동위원장	
58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에너지환경 노동위원장	
59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 의원 등 10인	
60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61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 의원 등 10인	
62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63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환 의원 등 50인	
64		국토교통위원회(7)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6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66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67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68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69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 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건)	의안명	제안자
70	국토교통위원회(7)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 의원 등 10인
71	성평등가족위원회(1)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성평등가족위원장

이번 호에서는 여러 중요한 법안 가운데 법정정책적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필수의료 등 지원 강화, 농수산물 온라인 유통 활성화, 재생에너지 지원 제도 정비, 자사주 소각 의무화 이슈를 다룹니다.

## 2. 주요 법정정책 이슈

### 가. 필수의료 등 지원 강화

#### 개요

최근 국내 의료체계에서는 응급의료, 외상, 분만, 소아진료 등 이른바 ‘필수의료’ 분야에서 인력 부족과 지역 간 의료격차 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에서는 응급환자가 적시에 치료받지 못하거나 분만 의료기관이 감소하는 등 의료 공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의료 인력의 수도권 집중과 필수의료 분야의 낮은 수익성 구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그동안 국회와 정부는 다양한 입법정책적 노력을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해 왔으나, 이번 입법을 통해 필수의료 정책 추진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과 재정 지원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국회는 필수医료를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해야 할 정책 영역으로 규정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필수의료 체계를 구축하도록 입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책 설계와 운영 과정에서 필수의료의 범위 설정 문제와 의료인력의 지역 유입 등 실효성에 관한 논란이 있으며, 이에 향후 정부의 세부 시행계획과 관련 정책의 추진 과정이 의료기관 및 관련 산업 전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6년 2월 12일 본회의에서는 전 국민에게 필수医료를 보장하고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는 내용의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정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 입법 동향

	소관위원회	의안명과 주요 내용	의결일자 (본회의 결과)
1	보건복지위원회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 (대안)	2026-02-12 (원안가결)

	소관위원회	의안명과 주요 내용	의결일자 (본회의 결과)
	보건복지위원회	<p>의료서비스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한 삶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으로,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적시에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함. 그러나 필수의료 공급 약화 등으로 인해 환자가 제때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여 생명과 건강을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와 함께 환자와 의료인력이 수도권으로 집중되어 지역의료 인프라는 악화되고, 이는 지역의료 역량과 신뢰 저하로 이어져 지역 간 의료격차가 심화하는 등 지역의료 위기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 구축, 필수의료인력 양성,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설치 등 지역완결적인 필수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지원사항들을 체계적으로 규율함으로써 모든 국민에 대한 필수의료 보장을 강화하고,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p>	2026-02-12 (원안가결)

## 정책 동향

###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84. 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복지부)

#### □ 과제목표

- 필수의료 자체 충족률 제고 통해 지역 간 치료 가능 사망률 격차\* 완화  
\* (23년) 인구 10만명 당 (17위 시도)49.9명, (17위 시도)36.9명

#### □ 주요내용

- (공공의료체계 강화) (중략)국립중앙의료원-(련략)국립대병원-(지략)지방의료원-보건소 간 공공의료 협력체계 구축 및 진료권별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 공공병원 없는 곳에 지방의료원 신설 추진, 공공병원 및 공공의료 수행 병원 대상 공공성 평가보상 등
  - 국립대병원 소관을 복지부로 이관하고, 권역 거점병원으로 체계적 육성
- (지역·필수의료 보상 강화) 필수의료 집중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 공공정책수가 신설·확대 ▲지역필수의료기금 신설 및 법령 제정 추진
  - 지역의료 자원분석을 토대로 의료 취약지역을 집중 보상하는 지역수가 제도 신설,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국가책임 강화
-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양성) 지역의사제 신설, (가략)공공의료 사관학교 설립 및 의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 추진
  - 전공의 등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수련환경 혁신 등 국가지원 확대
- (소아·응급의료체계 강화) 환자 증증도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중별 기능 명확화 및 역할에 따른 차등 보상, 응급환자 신속 이송·수용·전원체계 확립
  - 진료권 중심의 중증·응급질환 24시간 전문의 대응체계 및 야간·휴일 소아환자 진료협력체계\* 구축  
\* 달빛어린이병원 등 확충을 통해 (연략)달빛어린이병원-(호략)소아긴급센터-(호략)소아응급센터 협력
- (감염병 대응체계 개선) 감염병 예측·감시·역학조사 강화, 방역·의료 통합대응 체계 강화, 코호트 격리 등 방역 조치의 인권 보호 강화

출처: 이재명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자료

2026 정부 업무보고(보건복지부, 2025. 12. 16.)

**8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반 강화**<sup>[국정84]</sup>

- **(주요내용)** 인력·보상체계·안전망 등 든든한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반 구축
  - **(인력)** 수급추계 결과 바탕 합리적 의대정원 규모 결정<sup>(26.1.)</sup>, 안정적 공급 위한 지역<sup>(27~28)</sup>·필수<sup>(29~30)</sup>·공공의대<sup>(29~30)</sup> 도입 및 지역필수의사제 확대<sup>(26년4~26년6계 사도)</sup>
    - \* (지역의사제) 의대 신입생 중 일정비율 선발 학비 등 지원 → 졸업 후 특정 지역 의무복무<sup>(10년)</sup> (공공의대) 국가인재 양성을 위한 전국단위 최고교육기관으로 선발·교육·배치 단일 양성체계 구축 (지역필수의사제) 既배출된 전문의 대상 수당·정주여건 지원으로 지역 장기근무 유도
  - 지역의사제 사회적 논의 바탕 제도 세부사항 확정(하위법령 제정, '26.), 공공의대 법률 제정·부지 확보(중앙·지역 캠퍼스) 등 추진('26.上)
  - **(재정)** 건강보험<sup>건강보험</sup> 저보상 필수수가 인상<sup>(~'30)</sup>, 지역수가<sup>지역수가</sup> 도입<sup>(26.下)</sup> 등 공공정책수가 확대, 필수의료 사후보상 및 평가통합연계 등 가치기반 지불체계 강화<sup>(진료량·기능·성적)</sup>
    - \* 상대적 상시 조정<sup>(26.下)</sup>을 통한 경제감사 등 과보상 수가 인하 재원으로 진찰수술 등 필수수가 인상
    - \*\* 포괄 2차병원, 필수특화 기능강화 지원사업에서 취약지역 선정하여 수가 추가 지원 또는 기관단위 적정보상 및 비용지원 모델(예 : 건보+특별회계) 등
  - 국가재정 지역·필수의료 투자 강화를 위한 약 1조원 규모 특별회계<sup>특별회계</sup> 신설<sup>(27)</sup>
    - \* 중점 투자분야(안) : 책임의료기관<sup>책임의료기관</sup>·국립대병원<sup>국립대병원</sup>·지역의료원<sup>지역의료원</sup> 등 경쟁력 강화, 지역 의료인력·인프라 확충

출처: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부 업무보고 누리집

## 참고 자료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안: 제안 배경 및 총괄적 검토 등 2024. 11.

김미애 의원안: 제안 배경 및 총괄적 검토 등 2024. 8.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지방분권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국회의원 정책자료

지역필수의료 책임 네트워크 구축: 전달체계·거버넌스·재정: 연속토론회 1차, 국민중심 의료개혁 완수: 지역필수의료특별법 제정을 중심으로 국회의원 정책자료

우리나라의 필수의료 붕괴 대응을 위한 정책자료집 국회사무처 정책자료

「지역필수의료법」 본회의 통과, 특별회계 설치로 지역필수의료 투자 본격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브리핑룸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풀어야 할 과제와 메워야 할 공백 국회입법조사처 「NARS 현안분석」 2025. 12. 22.

□ 코로나19 팬데믹, 의정갈등으로 인한 전공의 집단 사직 등의 위기 속에서 다시금 드러난 필수의료 공백과 지역·계층 간의 건강불평등

○ 우리나라 보건의료 시스템은 민간주도형 공급체제로 공공부문 비중이 낮아 위기 상황 대응에 취약하고, 의료자원의 지역·전문과목별 불균형을 제어하지 못해 수도권 집중과 지역의료의 공동화(空洞化), 필수의료 붕괴 위험을 초래하고 있음

- 현 정부의 의료개혁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지만, 인력양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 부재와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 국립대학병원의 소관부처 이관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다양한 지원책이 제시되었지만 명확한 정책 목표와 단계별 로드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됨
- 의사인력 양성을 위한 지역의사제와 공공의과대학 설립에 관해서도 정책 목표가 명확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으며, 특히 공공의과대학 설치에 의대정원 확대 논의를 재점화할 수 있음
- 「제3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26~2030)」에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그간의 정책 평가와 앞으로의 실행전략 담겨야 함
- 지방의료원의 신설 추진, 공공병원 등에 대한 평가와 보상 강화 등 공공의료 인프라 강화가 신속히 추진될 필요가 있음
- 「제3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26~2030)」에는 다시금 드러난 필수의료 공백과 지역·계층 간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 방향과 구체적인 실행 전략이 담겨야 함

### ‘의정갈등 20개월’이 보건의료체계에 남긴 과제 : 신뢰 회복부터 지역·필수의료 정상화까지

국회입법조사처 「NARS 현안분석」 2025. 12. 22.

- 2025년 10월 비상진료체계가 종료되었으나, 20개월간의 갈등으로 신뢰의 훼손, 의사 양성체계 중단과 진료 공백, 막대한 건보재정 지출 발생
- 증원 규모의 합리성에 대한 의문과 일방적 정책추진, 계엄포고령의 ‘처단’ 표현 등은 의료공급자 단체의 신뢰를 훼손하고 대화 기회를 무산시키는 계기로 작용함
- 약 1년 반 동안 의사 양성체계 중단 및 수련병원 진료 공백 발생으로 3차 의료기관의 고난도 수술 감소 등의 료서비스 질적 저하 및 향후 신규 의사 배출도 지연될 예정임
-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약 1조 8,800억 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로 투입되어 적자 전환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음
- 의사인력 양성체계의 정상화와 신뢰 기반 의료정책 거버넌스의 구축, 이를 기반으로 한 지역·필수 의료 인력 확보가 갈등 이후 남은 과제
- 더블링 학년(2024·2025) 등 복학 의대생 교육여건의 확보가 시급하고, 수련시간 단축 등 수련환경 개선과 보상 다각화·현실화를 통한 지역·필수분야 전공의 확보 노력이 필요함
- 정책 방향을 결정할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를 통해 의료 공급자·수요자의 대화와 신뢰 회복을, 입법 완료된 ‘수급추계 위원회’를 통해 과학적·합리적 정책 근거 마련을 도모하여야 함
- 지역·필수의료 인력 확보 논의와 관련하여 복합적 유인 강화 방안과 근무 강도 및 소송 부담 등을 고려한 근무환경 개선이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음

### 법·제도의 공백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보건의료기관: ‘공공 일차의료’ 전담부서 설치와 보건의료원 역할 강화를 위한 법 기반 정비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2025. 11. 20.

필수의료 공백과 부실한 의료 인프라는 지방소멸의 원인이자 결과로 작용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보건의료기관은 취약지역의 ‘최후의 보루’로 주민 건강을 지탱하고 있으나, 법·제도의 공백으로 체계적 관리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는 보건소, 공공의료, 지역의료로 담당하는 부서가 각각 분리되어 있어, 보건지소·보건진료소를 전담하며 운영지침과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기능 개편을 체계적으로 논의·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무너진 지역의료의 회복을 위해서는 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일관된 전달체계와 효율적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일차 공공의료기관으로서 보건의료원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 지역보건의료체계의 법·제도 정비가 시급하다.

## 나. 농수산물 온라인 유통 활성화

### 개요

우리나라 농수산물 유통은 오랫동안 도매시장 중심의 오프라인 경매 구조를 기반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다수의 중간 유통단계가 존재해 유통비용이 높고 가격 변동성이 크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됩니다. 또한 대형 유통기업과 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소비시장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수산물 도매 유통은 디지털 전환이 상대적으로 더디다는 문제도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거래 및 온라인 유통이 급속히 확대되면서 농수산물 유통 분야에서도 온라인 기반 거래 플랫폼 구축 필요성이 크게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농산물 유통구조 혁신을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온라인 도매거래 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해 왔습니다. 실제로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을 시범 운영해 왔으나, 해당 제도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안정적인 시장 운영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국회는 온라인 도매시장 운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

2026년 2월 12일 본회의에서는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농수산물 유통구조를 혁신하는 내용의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 입법 동향

	소관위원회	의안명과 주요 내용	의결일자 (본회의 결과)
1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b>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b> 농수산물도매시장은 경매제를 중심으로 전국에서 출하된 다량의 농수산물을 신속히 수집하여 분산하고, 효과적인 가격발견, 교섭력이 약한 중소농 보호 기능 등을 수행하면서 농수산물의 주요 유통경로로 정착하였음. 그러나 거래단계마다 상품이 배송되는 상물일치(商物一致)형 거래로 인하여 유통비용이 증가하고, 일단 수도권으로 물량이 집중된 후 지방으로 재분산되는 물류 비효율이나 타나며, 특정 시장 내에서만 거래가 가능하여 경쟁제한이 발생함에 따라, 도매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현재의 농수산물 유통구조를 보다 효율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관련하여, 최근 각 산업 분야에서는 디지털 전환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농산물 유통 분야 역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례가 등장하고 있음. 이에 농수산물 도매유통 부문 역시 디지털로 전환하여 유통과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비용 절감을 통하여 생산자 및 소비자 후생을 증진할 필요가 있으므로,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2026-02-12 (원안가결)

## 정책 동향

###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68.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농업 육성(농식품부)

#### □ 과제목표

- 식량안보 체계 확립, 선제적 수급 안정으로 쌀·식량작물 적정가격 유지
- 스마트농업, K-푸드 수출, 친환경유기농업 확대 및 농축산물 유통개혁 추진

#### □ 주요내용

- (식량안보 강화) 식량 자급률 목표를 상향하고, 목표달성에 필요한 관련 예산 확보와 농지 면적 보전을 의무화하고 법적으로 제도화
  - 강력한 타 작물 인센티브로 쌀 생산과잉 사전 방지, 불가피한 과잉시 정부 매입
  - 농립위성을 활용한 수급예측 고도화, 자조급의 수급관리기능 제고
- (식생활 돌봄 대상 확대) 농식품 바우처는 차상위계층 임산부·영유아·아동·청년 가구까지, 아침밥은 대학생에서 산단 근로자까지 확대
  - 초등학교 과일간식 및 임산부 대상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공급 제고
- (스마트농업 고도화) 증소농을 위한 맞춤형 스마트팜 모델 개발, 스마트 농기자재 공유센터 도입 및 농업용 AI·로봇 등 신산업분야 R&D 투자 확대
- (K-푸드 수출 확산) K-푸드 거점 제외공관 지정 확대, ODA·문화 마케팅 연계, 한식·진통주 등 수출 주력 품목 육성으로 수출액 150억불 달성
- (유통구조 혁신) 농산물 도매유통의 50% 이상을 온라인 도매로 전환하여 도매시장 등의 유통단계를 축소하고, 경매제 중심의 가격결정 시스템 다양화
  - 출하자 지원자금 조성, 위탁수수료 체계 개편, 매수가격 공개 등 도매시장 공공성·투명성을 강화하고 생산자·소비자의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참여 확대
  - 생산·유통 일관출하 체계를 위해 스마트 AFC(산지유통센터) 확대(300개소) 등 추진
- (친환경농업 확산) 경축순환(가축분뇨 퇴비화)·탄소중립적불제 신규 도입, 생산과정 위험요소 평가 방식으로 인증제 전환 및 친환경유기농업 면적 2배 확대

출처: 이재명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자료

### 2026년 경제성장전략(관계부처 합동, 2026. 1. 9.)

#### ◇ 범부처 협업해 먹거리 등 생활물가 안정 및 생계비 경감 총력

##### 【물가관리체계 강화】

- 부처별 차관급 물가안정책임관 지정, 업무평가에 소관품목 물가지표<sup>※</sup> 반영 및 격주 물가관계차관회의(월 1회 장관회의) 통해 물가상황 밀착 점검·관리
- \* 예) (농식품부)농축산물 가공식품 (해수부)수산물 (행안부)지방공공요금 (교육부)초·중고 학원비 등

##### 【먹거리 등 생활물가 집중관리】

- (단기대응) 수급관리<sup>※</sup>, 할인지원, 할당관세<sup>※</sup> 등 가용수단 총동원
  - \* (쌀)수급 재전망<sup>26.2월</sup> 토대 수급안정방안 검토 (중)곡산 비축량 할인공급 등 공급계획 수립<sup>26.4월</sup>
  - \* (과일)산과배 지정출하 확대<sup>26.4.15부터</sup> (계란)위험지역 특별점검 등 시 방역관리 강화, 남품단가 인하지원<sup>26.1</sup>
  - \* (수산물)수입업체 구매자금 융자대상 확대<sup>26.4.15부터</sup> (유가)고통어 오징어<sup>26.1</sup>
  - \*\* 1.1일부터 식품원료 22종 할당관세 적용중 + 물가수입가격 등 모니터링해 긴급할당관세 적용 추진
- (구조개선) 유통구조 개선, 경쟁촉진, 생산성 제고 등 근본적 대책 병행
  - ▶ (유통구조 개선)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거래비중<sup>26.6</sup> →<sup>26.10</sup>~<sup>30</sup>50%),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 발표(26.1월),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연구용역(26.1)
  - ▶ (경쟁촉진) 주요 생필품 담합조사를 신속종료(대지고기, 설탕, 밀가루 등 주요 품목 가격담합 조사 완료, 26.1), 담합행위 적극 감시·엄중 제재, 설탕 할당관세 수입물량 확대(10→12만톤)
  - ▶ (생산성 제고) 공동영농 확산(공동농업경영체 지정요건 완화<sup>26.1.30</sup>·2026년 이후·농업인·농·산·협·동·체·제·확대), 스마트 농수산업 추진

출처: 2026년 경제성장전략(대한민국 경제대학교 약 원년)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자료

2026 정부 업무보고(농림축산식품부, 2025. 12. 11.)

③ 농축산물 유통개혁 추진 (국정과제 68)

- ◆ 온라인 중심으로 농산물 유통을 재구조화\*하고 오프라인 도매시장은 도매법인 경쟁체계 구축 및 비용 절감을 위한 유통단계 축소  
\* 온라인 도매 유통 비중 : ('25) 6% → ('26) 10 → ('30) 50
- ◆ 축산물은 가격 결정 투명화, 경쟁 촉진 등 합리적 거래기반 조성

- 온라인시장 거래규모 1.5조 원('26) 목표로 제도 및 활성화 기반 마련
  - 온라인도매시장 근거법률을 연내 제정\*하고 온라인 전용 물류체계 구축\*\*, 거래중개인·품질관리사 육성 등을 통해 대표 시장으로 안착  
\* '25.12.4, 상임위 법안소위 통과 \*\* '26, 공동수집합배송 등 거점물류센터 3개소 운영
  - 스마트 산지유통센터 확대(~'26, 115개소), 생산·유통 통합조직 육성(~'26, 81개) 등 산지 유통의 디지털화·규모화도 병행
- 도매법인 간 경쟁체계 구축 및 공익적 역할 확대 등 도매시장 제도 개선
  - 성과부진 도매법인 지정취소 의무화 등을 담은 농안법 개정('25.12. 상임위 의결) 및 엄정한 평가체계 운영('26~)
  - 도매법인 출하가격보전제\* 도입('26, 가락시장 시범), 경매 중심에서 예약형 정가·수익으로 거래방식 전환('24: 5%→ '26: 10) 등 도매가격 변동성 완화  
\* 경매물량 집중 등으로 가격 급락 시 도매법인이 농업인에게 최소한의 출하비용 보전
- 소비자들을 위한 '농산물 알뜰 소비정보 플랫폼(앱)' 개발
  - 누구나 인근 판매처별 농산물 가격, 할인정보 등을 알 수 있는 앱을 5개 지역 시범 적용('26.下) 후 전국 확대('27)  
\* '25.11월, 관계부처 합동 AI 민생 10대 프로젝트 선정('26~'27, 30억원)
- 축산물은 비효율적 유통 관행 및 가격 조사·결정체계 개선
  - 한우는 도·소매가격 연동성 강화(농협 권장판매가격 제시 등)와 함께 단기 비육 한우고기 유통 확대를 통해 소비자 부담 완화
  - 계란·닭고기는 가격 조사·결정체계를 개선\*하고 계란 중량규격을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알기 쉽도록 개선(왕·특·대·중·소란→ 2XL~S)  
\* (계란) 특대란 가격을 물량기준 가중평균 산출, (닭) 생닭 → 부분육
  - 축산물 가격 비교 가능한 '여기고기' 앱 활용 확대('25: 4천개소→ '26: 5)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부 업무보고 누리집

## 참고 자료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4. 8.

김현정 의원안: 농산물온라인도매시장 도입 등

김도읍 의원안: 농수산물온라인도매시장 도입 등

농수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도매유통개혁 방안 연구 국회사무처 정책자료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유통의 핵심 경로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 국회예산정책처 NABO Focus 제138호

'복잡한 단계 건너내자'...민·관, 농수산물 유통구조 혁신 모색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2030년까지 농산물 유통비용 10% ↓...온라인 도매 50%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박차! 생산자·소비자 모두 만족하는 스마트 유통혁신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브리핑룸

### 코로나19 이후 수산물 온라인 유통 활성화의 필요성과 향후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NARS 현안분석」 2020. 7. 3.

- 코로나19 이후 수산물 소비에 있어서 온라인 등 비대면 접촉 방식의 수산물 거래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수산물 온라인 거래 수요의 증가세는 코로나19 이후 수산물 유통 구조를 기존 오프라인 거래 중심에서 온라인 거래 중심으로 재편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현재 국내 수산물 온라인 거래는 일부 민간과 수협 등 생산자 단체에서 일어나고 있을 뿐, 국내 수산물 유통 구조는 여전히 도매시장, 위판장 등 기존 오프라인 유통구조 중심에 머물러 있음
- 이와 같은 국내 수산물 유통 구조에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비대면 접촉 방식의 거래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음
- 반면 미국, 중국 등은 빅데이터, ICT 등 4차산업혁명기술을 적용하여 대형 온라인 유통 플랫폼을 마련하는 등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수산물 온라인 시장을 확대하고 있음
- 이 글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수산물 유통·수출입 동향, 국내 수산물 유통 관련 법규, 정부의 관련 정책 및 제도, 해외사례 등을 살펴보고, 다음의 향후 과제를 제시함
- 수산물 온라인 유통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명확화, 수산물산지거점유통시설(FPC) 등에 온라인 유통기능 추가, 양식할어 온라인 유통 플랫폼 마련, 온라인 수산물 유통의 안전성 제고 및 위생관리 방안 마련, 생산자 중심의 온라인 거래 인프라 구축 및 역량 강화, 소비자 피해구제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함

## 다. 재생에너지 지원 제도 정비

### 개요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와 함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를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입법정책브리핑 제2025-5호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제2023-11호 재생에너지 확대 및 미래형 전력망 구축, 제2023-5호 에너지 공급체계 전환 이슈 등 참조), 재생에너지 지원 제도의 체계가 복잡하고 분산되어 있다는 문제, 재생에너지 개발 관련 규제의 지역별 편차, 재생에너지 시장 제도와 산업정책 간 연계 부족 문제 등과 같은 제도적 한계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가 동일한 법체계에서 혼용되면서 정책 대상과 지원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었고, 풍력이나 태양광 발전시설의 입지 규제(이격거리 규제 등)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크게 달라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을 높인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재생에너지 인증서(REC) 제도, 발전사업 허가 제도, 입지 규제 등 여러 정책이 분산적으로 운영되면서 투자 예측 가능성이 낮다는 비판도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국회는 재생에너지 지원 제도를 보다 명확하고 일관된 체계로 정비하는 방향의 입법을 추진하였습니다.

2026년 2월 12일 본회의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일관된 이격거리 규제 기준 및 예외 사항을 규정하고, 재생에너지 관련 지원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통과되었습니다.

## 입법 동향

	소관위원회	의안명과 주요 내용	의결일자 (본회의 결과)
1	기후에너지환경 노동위원회	<p><b>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b></p> <p>현재 재생에너지 설비의 이격거리 기준은 관계 법령의 위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별로 이격거리 규제의 편차가 크고, 과도한 규제로 인해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부지가 제한되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추진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차원에서 일관된 이격거리 규제 기준 및 예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임. 한편,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가 혼용하여 사용됨에 따라, 신에너지가 재생에너지인증서(REC)를 발급받는 문제가 생기고, 재생에너지 관련 통계에도 신에너지가 포함되어 혼선을 가져오는 등 부작용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수소, 연료전지, 석탄가스화 복합발전(IGCC) 등 신에너지에 관한 사항을 현행법에서 삭제하여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고, 제명을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으로 변경하는 등 재생에너지 관련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명, 제27조의3 신설 등).</p>	2026-02-12 (수정가결)
2		<p><b>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b></p> <p>현행법은 수소의 생산·수입 등의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거나 적게 배출하는 청정수소 중심의 수소경제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청정수소에 대한 등급별 인증제를 도입하고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운영자 등에게 수소판매·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정수소로 판매·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를 도입하였음. 그러나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만으로는 수소에너지의 사용을 근본적으로 촉진하기 어려우므로, 수소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연료전지 등 수소에너지 설비의 보급을 확대·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이 법에 수소에너지에 대한 정의를 이관하여 규정하고, 수소에너지와 연료전지 등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탄소중립사회의 전환을 구체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p>	2026-02-12 (수정가결)

정책 동향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39.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산업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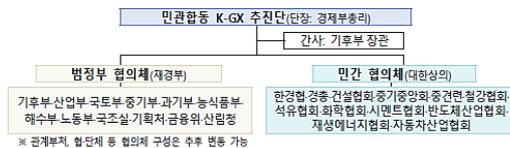
- **과제목표**
  - 재생에너지 확대 및 제도 개선을 통해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 햇빛·바람연급 확대, RE100산단 구축 등 지역 균형성장 기반 마련
- **주요내용**
  - (재생e 확대) 재생e 목표('30. 78GW)를 상향하는 로드맵 수립·이행
    - 계획입지 발굴, 집적화단지 신속 조성, 인허가 의제 처리 등을 통한 서남해·제주 해상풍력 단지 구축
    - 산단·영농형·수상·주차장·지자체 소유 공공부지 등 태양광 입지 다각화
    - 조력·수열 등으로 재생에너지 다각화, '40년 석탄발전 폐지 추진
  - (재생에너지 제도 개선) 재생에너지 보급 제도를 계약시장으로 단계적 개편, 인허가 절차 간소화, 지자체의 이력거리 완화·폐지 추진 등 규제 혁신
    - \* 정부주도 계획입지 도입, 전파영향평가 기준 완화, 풍황계측기 설치허가 개선 등
  - (산업 경쟁력 강화) 차세대 태양전지 조기상용화, 해상풍력 터빈·부품·지자체 기술개발, 설치선 건조 및 전용항만 설치
  - (지역 상생) 햇빛·바람연급 확대, 마을단위 에너지자립 등으로 지역소득 증대
    - 재생에너지 종합서비스기업(재생에너지 모집·인허가·설치·유지보수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 육성·활용을 통해 주민 수용성 제고
  - (RE100산단)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에 '지산지소'형 RE100산단 조성
    - 파격적 인센티브 등을 포함하는 특별법 제정
    - 기업유치를 위한 분산형 모델(재생e 직접 거래) 및 재생e 요금 강구
    - 기업투자와 인계유치를 위한 경주·교육 여건조성 및 신도시 기반 마련

출처: 이재명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자료

2026년 경제성장전략(관계부처 합동, 2026. 1. 9.)

◇ 온실가스 감축 가속화,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로 녹색 대전환(GX) 추진

- 기후위기를 성장기회로 활용하고 2035 NDC 이행을 위해 전력·산업·수송·건물 등 소부문 녹색 대전환과 지원방안을 담은 K-GX 전략 마련(26.1.)
  - (전력) 탈탄소 에너지 대전환을 위해 재생e 중심 에너지 시스템 설계
    - \* 재생e 보급률 50% 이상 달성(26-30) / 시장제도 재생e 보급제도 단계적 전환(26-27년)
  - (산업) 설비·공정 전환 R&D 확대, 감축투자 보조·용자, 저탄소 인증제 개편, 탄소크레딧 거래소 신설 등 산업 탈탄소 전환 지원 확대
    - \* 탄소중립산업기후테크 등 초산업수주기 투자 확대 \*\* 탄소배출량 기반-탄소배출량 탄소감축정도 모두 고려
  - (수송·건물)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녹색건축물 건설(26.2분기), 히트 펌프 확대 등 자립형 친환경에너지 시스템 설계, 친환경차 보급 확대
    - \* 버스회 등 친환경 전기수소차 전환, 대용량 수소교류 특화단지 지속 확대(최근 5년 평균 1-2곳)
  - (인프라) 해상풍력 인프라, 항만 등, 전력망·차세대전력망, 송전선도 구축, 첨단산업 용수공급 시설 등 K-GX 추진 위한 대형 인프라 확충 계획 마련
- 재정·금융 등 패키지 지원 통해 가시적 성과 조기 창출
  - (재정) K-GX 전략 추진을 위해 향후 10년간 대규모 재정투자 추진
  - (금융) 기후금융·녹색금융 공급 확대, 한국형 전환금융 도입(26.1분기)
  - (제도) K-Taxonomy, 저탄소 제품 등 탈탄소 경제활동 전방위 지원
  - (수출) 탄소중립산업 수출전략, K-Energy 수출대책 등 전략 마련 추진
- 유엔기후변화협약, 글로벌녹색성장기구 등과 협력해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GVCM)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우리 기업 참여 지원
  - \* 측정·보고·검증(MRV) 기준, 방법론 등 시범사업에 활용될 기준 마련 병행
- K-GX 추진단(단장: 경제부총리, 간사: 기후부 장관) 내 범정부 및 민간 협의체 구성해 구체적 정책과제 발굴 및 법·제도 개선 추진



출처: 2026년 경제성장전략(대한민국 경제대도약 원년)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자료

2026 정부 업무보고(기후에너지환경부, 2025. 12. 17.)

1 '30년 재생e 100GW 보급으로 에너지 대전환

'30년 재생e 100GW 보급 목표로 정책역량 총동원

< 태양광 >

□ (규제개선) 이격거리 규제 개선\*(‘26.1분기), 영농형태양광 특별법 제정(‘26.上, 농식품부), 접경지역 규제 완화(‘26.下, 국방부)

\* 재생에너지법 개정 : 원칙적으로 이격거리(태양광-육종) 금지, 하위법령에 예외 규정

□ (부지) 범정부 협업으로 부지 발굴\*, 국민 일상공간\*\*에서 에너지 생산

\* 농지, 간척지, 수상(水上), 접경지역 군부대 및 유휴부지(도로·철도·농수로·매립지 등)

\*\* (산단·공장지붕) 공공주도 기획, 기업 컨설팅, 홍보 지원 등 43억원 신규반영(26년)  
(학교) <sup>기초</sup>사립학교 100개소 지원예산 60억원 반영 / <sup>고졸</sup>국립학교 400개소 추진(26년)  
(주자장) <sup>공영</sup>주차장 약 1,500개 1.1GW, <sup>권역</sup>시영 26년 시범적으로 50~100개소 우선설치(15억원)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부 업무보고 누리집

## 참고 자료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및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지혜 의원안: 이격 거리 미설정 지자체에 대한 정부사업 우선지원 2025. 9.

이소영 의원안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이격거리 설정 2025. 11.

김성환 의원안: 신에너지를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 2024. 11.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 11.

김성환 의원안: 수소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사항 이관

###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 분리를 위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토론회

 국회의원 정책자료

###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RPS 제도 개편 방안 토론회

 국회의원 정책자료

### 태양광 발전 이격거리 규제 현황과 쟁점

 국회예산정책처 NABO Focus 제79호

### 신·재생에너지 분류 체계 현황과 개선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2019. 2. 11.

신·재생에너지로 분류된 에너지원들은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받으며, 관련 보급 통계의 조사 대상으로서 대체에너지 육성 정책의 목표 달성 여부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 어떠한 에너지원을 정책 지원대상이 되는 신·재생에너지로 분류하는가에 따라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원을 이용한 발전량을 국내 총 발전량 대비 20% 이상’으로 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보급 목표(이른바 ‘재생에너지 3020’) 달성 가능성이 좌우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분류 체계 현황을 살펴보고, 해외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개선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 라. 자사주 소각 의무화

### 개요

최근 국내 자본시장에서는 기업의 낮은 주주환원 수준과 지배구조 문제,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많은 상장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한 이후 이를 소각하지 않고 장기간 보유하거나 경영권 방어 수단 등으로 특정 거래에 활용하는 관행이 일반화되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자사주가 주주환원보다는 경영권 유지 또는 지배구조 전략에 활용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자사주 취득을 실질적인 주주환원 정책으로 유도해야 한다는 입법 논의가 확대되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집권 초기부터 자사주 취득 이후 일정 기간 내 소각을 의무화하는 방식의 상법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재계와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기업의 재무 전략과 경영 자율성의 과도한 제한, 경영권 방어 수단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 주가 변동성을 확대할 가능성 등을 이유로 정책 추진을 반대해 왔습니다. 이번 상법 개정은 국내 자본시장의 주주환원 정책을 강화하고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려는 입법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관련하여 입법정책브리핑 [제2025-11호](#), [제2025-8호](#), [제2025-6호](#), [제2025-3호](#), [제2022-11호](#) 등 참조). 실제로 기업들이 배당 확대와 자사주 소각을 병행하는 주주환원 정책을 확대할지 여부가 국내 자본시장에 중요한 변화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6년 2월 12일 본회의에서는 반도체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등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내용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법률안 등이 통과되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지평 뉴스레터 [2026 정기주주총회 가이드: 집중투표제 · 자사주 의무소각 시행 전 선제적 대응전략](#) 참조).

### 입법 동향

	소관위원회	의안명과 주요 내용	의결일자 (본회의 결과)
1	법제사법위원회	<b>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b>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1년 이내에 소각할 의무를 부여하고, 임직원 보상 등의 경우 주주총회의 승인에 따라 자기주식의 예외적인 보유 또는 처분을 허용하며, 자기주식에 대해 의결권 또는 배당을 받을 권리 등이 인정되지 아니함을 명시하는 등 이 법에 따른 자기주식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자기주식 제도와 관련된 일반 주주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자본총실원칙을 도모하려는 것임.	2026-02-25 (원안가결)

## 정책 동향

###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47. 코리아 프리미엄을 향한 자본시장 혁신(금융위)

#### □ 과제목표

- 자본시장 혁신을 통한 코리아 프리미엄 실현

#### □ 주요내용

- (주주가치 제고) 이사 충실의무 확대 등을 위한 개정 「상법」의 시장 안착 및 추가입법 단계적 추진(법무부)
  - 주주이익 환원을 위한 자사주 원칙적 소각 제도화 검토
  - 합병·분할 등 과정에서 일반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
    - \* 합병분할시 공정가액 적용, 쪼개기 상장시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배정 및 의무공개매수 도입 등
  - 스톱어드십 코드\* 적용 확대 및 이행여부 점검·공시 등 내실화 추진
    - \* 기관투자자가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주가가치 제고 등을 위해 주주권한을 행사토록 유도하는 지침
-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불공정거래(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등)를 엄단 하기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불법이익은 철저히 박탈
  - 불공정거래 탐지·적발 역량 제고를 위해 AI기술 도입·활용 및 한국 거래소 시장감시 담당 조직·인력 확충
- (주식시장 수요기반 확충)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MSCI 및 글로벌 투자자 등과 대외소통 강화
  - 공모주 우선배정 확대 등 코스닥벤처펀드 활성화
  - 기업의 성장단계별 특성을 감안하여 주식시장을 재구조화\*하고, 기관 투자자 의무보유 확약 확대 등으로 건전한 IPO 환경 조성
    - \* (예) 코넥스(벤처중소 위주) - 코스닥(성장중견 위주) - 코스피(우량·대기업 위주)

출처: 이재명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자료

### 2026년 경제성장전략(관계부처 합동, 2026. 1. 9.)

- (자사주 세제 합리화) 상법개정 연계 세제 합리화 방안 마련(26.1.)
  - 자사주 취득·소각·처분을 자산거래에서 자본거래로 일원화해 법인의 자사주 소각·처분 관련 법령간 체계 정합성 제고
    - \* (현행)자사주 처분시 처분이익 익금산입<sup>소득세 적용</sup> → (개선)처분시 처분이익 익금불산입<sup>소득세 적용</sup>
  - 자사주 취득·처분의 자본거래화에 따른 관련 세법사항 정비
    - \* 법인이 자사주 취득시 주주의 자사주 양도대가의 소득구분 등 소득세·상속증여세법 등 정비

출처: 2026년 경제성장전략(대한민국 경제대도약 원년)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자료

### 2026 정부 업무보고(법무부, 2025. 12. 19.)

□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상법」 개정 및 후속 조치

- (추진 경과)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자본시장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주주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상법」 1, 2차 개정 완료('25. 7.~9.)
- (추진 과제) 주주 충실의무 도입 후속 조치로, 현장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이사의 행동기준을 구체화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전자주주총회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시행령 개정('26. 上)
  - \* 회사와 주주, 지배주주와 소수주주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상충되는 상황에서, 경영자에게 법적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는 안전장치(Safe Harbor) 제공하여 경영판단 지원

	주요 내용	이행 계획
1차 개정 ('25. 7)	▲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 ▲ 전자주주총회 제도 신설('27. 1.)	· '26. 上 「이사 충실의무 가이드라인」 제정 · '26. 上 「상법 시행령」 개정
2차 개정 ('25. 9)	▲ 대규모 상장회사 집중투표 의무화	· 상시 실태 점검
3차 개정 ('26. 上)	▲ 주주 환원 강화를 위한 자사주 제도 개선	· '26. 上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지원

출처: 법무부 업무보고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부 업무보고 누리집

## 참고 자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태호 의원안: 자기주식 처분 제한 2025. 3.

정준호 의원안: 자기주식 처분의 상대방 등 제한 2024. 8.

정준호 의원안: 분할회사 보유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 배정 금지 2024. 8.

자사주 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토론회 국회의원 정책자료

상법상 자사주 문제 진단과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국회의원 정책자료

정기주주총회를 대비하여 「개정 상법 길라잡이」 발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브리핑룸

기관투자자의 주주가치 제고 활동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브리핑룸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의 문제점 연구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

### 자기주식 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상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포커스 2026-04호 2026. 2. 23.

자기주식 취득과 소각은 기업 성과를 주주와 공유하는 대표적인 주주환원 수단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상장회사들은 자기주식 보유 및 활용에는 적극적인 반면, 정작 주주가치 제고로 직결되는 소각에는 소극적이었다. 더욱이 자기주식이 처분 과정에서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사례가 적지 않으며, 이러한 왜곡된 활용은 자본시장의 신뢰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자기주식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최근 상법 개정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 이하에서는 상장회사의 자기주식 활용 현황과 현행 법제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짚은 후, 현재 발의된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자기주식 제도의 개선과제 자본시장연구원 이슈보고서 24-13 2024. 7. 16.

자기주식의 취득과 소각은 배당과 함께 대표적인 주주환원 정책임에도 우리나라 상장회사들은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활용하면서 소각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2022년 말 기준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전체 상장기업의 67% 이상인 반면, 2022년 자기주식의 소각은 54건으로 전체 상장기업 중 2.2%만 소각했다. 국내 기업들이 자기주식을 소각하지 않고 보유하는 것은, 자기주식을 활용할 수 있는 재량권이 제도적으로 보장된 것이 주 원인이다. 2011년 상법 개정을 통해 회사가 자기주식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는 구비된 반면, 자기주식을 이용해 지배권을 강화하고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은 마련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기업에서는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지 않고 보유하다가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시 자기주식을 우호 주주에게 처분하여 의결권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회사는 자기주식 처분을 활용하여 신주의 제3자 배정에 대한 규제를 우회하면서도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인적분할시 신주배정 등을 통해 자기주식을 지배권 강화에 활용할 수 있다. 한편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자기주식에 아무런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신주의 제3자 배정과 자기주식 처분에 대한 규제차익도 없어 우리나라와 같은 문제가 제기되지 않고 있다. 자기주식의 자의적 활용을 방지하고 소각으로 이어지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먼저 자기주식에 아무런 권리가 인정되지 않음을 명문화하여 해석을 통해 자기주식을 활용하는 편법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신주발행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는 특징인 대상 자기주식의 처분에 신주의 제3자 배정과 같은 규제를 두어 주주를 보호하고, 불공정한 자기주식의 처분에 대해 주주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수단을 도입해야 한다.

#### (사)지평법정책연구소 · 법무법인(유) 지평 공공정책솔루션센터



이공현 명예대표변호사  
(지평법정책연구소 이사장)  
02-6200-1770  
leekh@jipyong.com



임성택 대표변호사  
02-6200-1746  
stlim@jipyong.com



윤영규 변호사  
02-6200-1743  
ykyun@jipyong.com



김진권 변호사  
02-6200-1812  
jkkim@jipyong.com



박성철 변호사  
02-6200-1777  
scpark@jipyong.com



신용우 변호사  
02-6200-1974  
ywshin@jipyong.com



민창욱 변호사  
02-6200-1841  
cwmin@jipyong.com



이춘희 선임연구위원  
(지평법정책연구소)  
02-6200-0628  
chy@jipyong.com

지평법정책연구소 · 지평 공공정책솔루션센터 입법정책브리핑의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간단한 설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설문조사 참여 링크](#)).